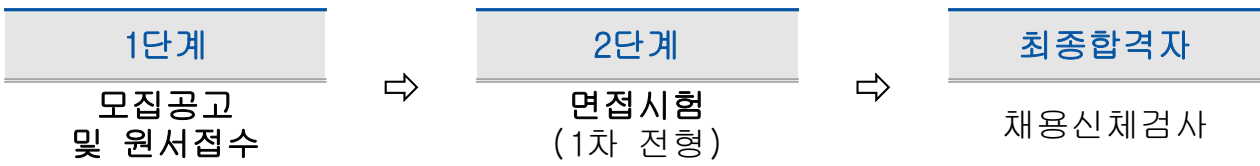


1.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등

구분	대전광역시 보조기기센터(재활의학과)
모집분야	보조공학사 또는 사회복지사
모집인원	1명
필수자격	보조공학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
우대사항	- 운전면허증 소지자 우대 - 사회복지사의 경우 사회복지사 1급 우대
급여수준	약 월2,242,000원 수준
계약기간	임용일 ~ 2020.12.31.(육아휴직자 대체)
담당업무	- 보조기기 사례관리(대상자 상담 및 평가) - 보조기기 사업운영(교육, 홍보 등 행정 업무)
비고	- 보조금사업으로 인한 채용으로 병원 직원 전환 예외 - 보조금사업이 조기 종료 될 경우 자동으로 계약종료

2. 응시자격



3. 전형(시험)단계

※ 전형일정은 본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전형일정	전형일시	비고
원서접수	2019.12.03.(화) ~ 2019.12.12.(목) 17:00	
면접시험	2019.12.18.(수) ~ 2019.12.20.(금) 예정	개별안내
결과통보	2019.12.24.(화) ~ 2019.12.27.(금) 예정	
신체검사	2019.12. ~ 2020.01. 中 실시	개별실시
임용예정일	2019.12. ~ 2020.01. 中 임용예정	

4.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

- 1) 접수기간 : 2019년 12월 3일(화) ~ 2019년 12월 12일(목) 오후 5시까지
- 2) 접수방법 : 본원 채용정보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(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
- 3) 등록서류 : **(필수)필수 자격증**, (해당자)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
- 4) 등록방법 : 등록서류 스캔 후 원서접수 작성화면에서 인터넷 업로드
 - ※ 블라인드 채용으로 직무와 관련 없는 인적사항(생년월일, 성별 등)은 가린 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※ 필수 자격증(보조공학사 또는 사회복지사) 미등록 시 면접시험 응시불가

5. 면접시험 안내

- 1) 면접일시 : 2019년 12월 18일(수) ~ 2019년 12월 20일(금) 예정
- 2) 면접장소 : 확정 시 개별 안내 예정
- 3) 결과발표 : 2019년 12월 24일(화) ~ 2019년 12월 27일(금) 발표 예정

6. 최종합격자 제출서류

- 1) 주민등록등본 1부
- 2)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3) 최종학력증명서 1부
- 4) 채용신체검사결과지 1부
- 5) 급여통장사본 1부
- 6) 증명사진 1부

7. 기타사항

- 1) 본원 인사규정 제24조 및 관련 법률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2) 채용신체검사 결과 회신 전에도 채용할 수 있으며, 채용된 이후에도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사유 발생 시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3)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인사규정 등 본원 내부규정 등에 의하며,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4) 신규직원 선발과정에서 응시인원이 미달되거나 적임자가 없을 시,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게 선발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5) 제출된 서류는 임용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,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.
- 6) 제출된 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의 '별지 제3호서식'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전자우편(unhyung1125@cnuh.co.kr) 또는 팩스(042-280-6229) 등으로 제출할 시 반환청구가 가능하며, 수신자 부담으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드립니다

임용결격사유 (인사규정 제24조)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<개정 2016.12.28>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7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자
8.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고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<개정 1996.12.11>
9.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
10. 삭제 <2017.06.23>
11. 전염병질환자 또는 육체적·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
12.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<신설 2016.12.28>
13. 『형법』제303조 또는『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』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<신설 2019.09.30>
14. 「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」 제16조 제4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채용에 합격한 부정합격자 <신설 2019.09.30>
15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제14호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<신설 2019.09.30>
16.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